

# 투자권유준칙



**바로투자증권**  
BARO Investment & Securities

# 목 차

## 제1편 총 칙

- 제1조 목 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 제4조 방문 목적 확인
- 제5조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6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제7조 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원칙)

##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1장 투자자정보

- 제8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제9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제2장 투자권유

- 제10조 투자권유 절차
- 제11조 고령투자자에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제12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제13조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제3장 설명의무

- 제14조 설명의무
- 제15조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제5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제16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제6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 제17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제18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 제19조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제20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제21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 제22조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 제23조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투자권유준칙

제정 2009.02.04  
개정 2009.02.16  
2009.02.19  
2009.03.16  
2009.09.25  
2011.01.07  
2011.09.23  
2012.07.11  
2013.08.29  
2014.06.01  
2014.10.01  
2016.04.01  
2016.06.30  
2017.01.01  
2019.06.26

## 제1편 총 칙

###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9조제4항
2.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4.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에 따라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일중매매거래”란 같은 날에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6. “시스템매매”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고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도 시스템매매로 본다.
7.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8.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법 제46조의2제1항
  - 가. 파생상품
  -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 “파생상품등”이란 법 제46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지칭

- ①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 ②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
  - ③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본문에 따른 인덱스펀드는 제외되나,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파생상품등에 해당)
  - ④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②의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⑤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 ⑥ ①~⑤까지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 ☞ 가. 집합투자재산의 50% 이하로 ②의 파생결합증권(단서 제외)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 나. ②의 단서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파생상품등”의 범위에서 제외

###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7조제2항

##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 제4조(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 법상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제공 등은 투자권유로 보기 어려움
- ▶ 투자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음

### 제5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1항
-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5항 단서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과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법 제9조제5항제4호단서

###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파생상품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법 제124조제1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 제124조제3항 및 제4항

⑤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 제7조(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 적정성원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의2제1항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법 제46조의2제2항, 법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

##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1장 투자자정보

####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 및 취약한 금융소비자 여부를 (별지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⑤ 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5호)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36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

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 제2장 투자권유

### 제10조(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4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6조제3항
-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④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⑤ 임직원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 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투자성향 부적합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나.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8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법시행령 제186조의2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9조, 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8조제5항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8조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3) 신탁계약
      - (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나)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5. 임직원등은 정보미제공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권으로서 향후 상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증권
  - 나. 증권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증권
  - 다.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

라. 신용거래 및 예탁재산 규모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증권거래  
마. 파생상품 등

6.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7.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 “유사한 펀드”란 아래 기준에 따른 펀드를 말함

- 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것
- ②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같은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펀드일 것.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회사가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음

\* ① 및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 중에서 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지역(국내·해외) 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하여야 함. 다만, 해당 펀드의 향후 전망, 운용 안정성, 판매전략 등을 감안하여 달리 투자권유할 수 있음

### 제3장 설명의무

#### 제14조(설명 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별지 제7호]의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법 제47조, 법시행령 제53조

-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법 제12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9호나목
- ⑤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7조제3항
-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

조 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3.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5.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제5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제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제3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제6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제1항, 제2항, 법시행령 제61조

###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법 제55조

### 제19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①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법 제71조,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가목

#### ②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나목

#### ③ 부당한 권유 금지

1.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5호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9호

3.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11호
4.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다목
5.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바목
6.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료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아목
7.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가목
8.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라목
9.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0. 임직원등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로보어드바이저”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의미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7-1.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법 제97조, 법시행령 제98조

#### 제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법 제98조제1항, 법시행령 제99조제1항

#### 제22조(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 “투자자 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법 제46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2.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

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3조(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①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9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1년 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1년 9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7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목차

(별지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별지 제2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별지 제3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별지 제4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별지 제5호)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별지 제6호) 위험고지서

(별지 제7호) 금융투자상품 고객 확인서

(별지 제8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별지 제9호) 적합성 보고서

(별지 제10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정보 확인서》

-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투자자구분

-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 ◆ 투자권유 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희망 (정보제공 필수)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b>※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파생상품등 거래희망시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li> </ul>	

### ◆ 등록구분

- 등록 및 변경       투자정보 변동없이 기존정보와 동일

### ◆ 투자자정보 기재 사항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개인)	<input type="checkbox"/> 19세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40세 <input type="checkbox"/> 41세~50세 <input type="checkbox"/> 51세~60세 <input type="checkbox"/> 60세 이상
1-1. 고객님의 자본금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법인-총자본기준)	<input type="checkbox"/> 200억이상 <input type="checkbox"/> 100억이상~200억미만 <input type="checkbox"/> 50억이상~100억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이상~50억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미만
2.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6개월이내 <input type="checkbox"/> 6개월이상~1년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2년이내 <input type="checkbox"/> 2년이상~3년이내 <input type="checkbox"/> 3년이상
3.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 상품은 어느 것입니까?(중복응답가능)	<input type="checkbox"/> 은행 예 . 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 일부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비보장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투자자 성향	(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자 본 확인서를 기재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거래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36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년      월      일  
**본 인** (인/서명)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인/서명)

유선접수자	(인)	유선접수시간	고객연락번호
-------	-----	--------	--------

##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 ■ 문항별 배점

문항 \ 응답	①	②	③	④	⑤
1번	4점	4점	3점	2점	1점
2번	1점	2점	3점	4점	5점
3번	1점	2점	3점	4점	5점
4번	1점	2점	3점	4점	
5번	5점	4점	3점	2점	1점
6번	3점	2점	1점		
7번	-2점	2점	4점	6점	

- 1번 :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점, ④로 응답한 경우 6점

###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7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7번까지의 합이 26점인 경우,  $26\text{점}/32\text{점} \times 100 = 81.3\text{점}$

### ■ 등급에 의한 투자성향 분류

- 점수 계산 결과에 따라 1단계 ~ 5단계 등급에 의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류

· 20점이하 : 안정형  
 · 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추구형  
 ·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Middl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BBB-)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KONEX 주식	주 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아래 6단계로 분류

구 분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낮은 위험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펀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구분	상품	설명
주의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경고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위험	주의, 경고 상품을 제외한 그밖의 장외 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펀드 외)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Middl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구 분 (펀드)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인 고객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의 거래(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거래(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되며, 파악한 정보로 고객에게 적합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또한 일반투자자인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파생상품이 그 고객에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고객으로부터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님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의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유형	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비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	---------------------------------------------------------

### I. 고객의 재무현황

####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 \_\_\_\_\_ 외화자산 총계 : \_\_\_\_\_  
부채 총계 : \_\_\_\_\_ 외화부채 총계 : \_\_\_\_\_  
연간 수출총액 : \_\_\_\_\_ 연간 수입총액 : \_\_\_\_\_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 \_\_\_\_\_

####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



---

###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고객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_____	직 급 : _____	성 명 : _____	
관련경력 : _____	관련 자격 : _____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_____ (전문가 수준) :	중 : _____	하 : _____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_____	직 급 : _____	성 명 : _____	
관련경력 : _____	관련 자격 : _____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_____ (전문가 수준) :	중 : _____	하 : _____
3. 고객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_____		아니오 : _____	
4. 고객님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고객님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_____		아니오 : _____	

※고객이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V. 위험관리능력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 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_____	_____	조직명: _____ 인원수: _____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_____	_____	규정명: _____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_____	_____	전산시스템명 : _____

## VI. 금융거래수준

고객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_____	_____	_____	_____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	_____	_____	_____	_____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KIKO 등	_____	_____	_____	_____
금리 스왑(Interest Rate Swap)	_____	_____	_____	_____
신용디폴트 스왑(Credit Default Swap)	_____	_____	_____	_____
상품 파생(Commodity)	_____	_____	_____	_____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고객 확인**

이 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본인이 ㄹ금융투자업자와 하려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는 본인의 거래 목적, 기타 모든 면에서 적합한 거래임과 금융투자업자가 이 확인서 사본을 본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_\_\_\_년 \_\_\_\_월 \_\_\_\_일

(직위) \_\_\_\_\_ (담당자) \_\_\_\_\_ (인/서명)

(법인명) \_\_\_\_\_

**ㄹ금융투자업자**

이 확인서 내용은 ㄹ금융투자업자가 고객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_\_\_\_년 \_\_\_\_월 \_\_\_\_일

바로투자증권(주) \_\_\_\_\_ (담당자) \_\_\_\_\_ (인/서명)

고객이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이 조사표 사본에 ㄹ금융투자업자가 기명 날인을 한 후 이를 고객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이 조사표 원본은 금융투자업자가 보관합니다.

■ 시스템매매(System-trading) 위험고지

“시스템매매(System-trading)”란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 시스템매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매매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이해없이 시스템매매를 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시스템매매는 지나친 매매거래를 유발하여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급격한 시장변화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세지연, 체결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착오나 조작 실수로 인하여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일종매매거래(Day-Trading) 위험고지

\* “일종매매거래(Day-trading)”라 함은 하루 중에 금융투자상품을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하루 중의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 귀하는 일종매매거래를 하기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일종매매는 단기간 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원본초과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일종매매거래는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나보다 더 뛰어난 수많은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잦은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의 부담으로 고객의 손실이 더 커지거나 이익 중 상당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고객 확인서 >

◆ 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초고위험)에서 6등급(초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명 :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투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성향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위험등급	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 회사 및 점포명 :

■ 판매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연락처 :

■ 계좌번호 :

설명내용 고객 확인사항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  교부를 거부 )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현금예수금(위탁자예수금·수익자예수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일부 담보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임

고객명 : \_\_\_\_\_ (서명/인)

\* 음영 부분 고객 자필기재

##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제정 2016.03.23

### 제1조(목적)

본 기준은 바로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령투자자의 정의)

- ① 회사는 만 70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서는 고령투자자에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 ③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 고령투자자에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하여야 하고,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는 고령투자자에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영업점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 ②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내점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 창구를 이용하도록 먼저 안내하여야 하나, 고객이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전담창구 배치 직원은 근무연한이 3년 이상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영업점의 상황에 따라 배치를 달리 할 수 있다.
- ④ 업무팀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담창구에 배치하는 것을 배제되어야 한다.

### 제4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회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2.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3.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4.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5.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6.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7.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8.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9.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10.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제5조(고령투자자 전담 부서 및 전담 직원)

- ① 회사는 준법감시부서를 고령투자자 전담부서로, 해당 부서의 투자권유절차 담당 직원을 전담직원으로 지정한다.
- ② 회사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경험이 많은 직원을 전담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①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
2. 장외파생상품

3. 구조화증권
4. 조건부자본증권
5. 후순위 증권
6. 제1호~제5호의 상품이 주로 편입된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

### 제7조(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고령투자자 투자권유 절차)

- ①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지점장 또는 준법관리자(이하 '관리직 직원')가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해 고령투자자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③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④ 관리직 직원은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 여부
  2. 투자자금의 성격(생계자금 해당 여부 등)
  3.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 변경 여부)
  4.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5.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말투, 기억수준 등의 고려)
- ⑤ 고령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관리직 직원이 추가로 설명한 후 고령투자자의 투자의사를 재확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제8조(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회사의 상품기획 및 개발부서는 상품개발 체크리스트 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고령투자자에 대한 위험요인 점검 항목을 추가하고, 상품개발 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고령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
2. 고령투자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제9조(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 ① 고령투자자 전담부서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본 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특히, 고령투자자 전담 창구 직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고령투자자 전담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점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판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영업점 영업직원 또는 업무직원은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조력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⑤ 영업점 및 마케팅 관련 부서에서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으로부터 관련 광고물에 대한 사전 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 제10조(초고령투자자에 대한 추가보호방안)

- ①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에서 지정한 '투자권유 유의상품' 및 초고령투자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할 수 없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이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초고령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고, 투자권유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초고령투자자가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판매를 허용한다.
  1. 상품 가입을 위해 가족 등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조력을 받은 경우 조력자로부터 설명을 같이 들었다는 서명을 받거나 녹취를 하여야 한다.
  2.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조력을 거절하는 경우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관리직 직원은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이나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비대면 방식의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초고령투자자에게 1일 이상의 투자숙려기간을 부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파생결합증권 등의 청약 마감일에 방문한 초고령투자자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숙려기간 없이 판매하는 것을 예외로 허용하되, 판매 담당 임직원 및 관리직 직원은 관련 상품의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제11조(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하여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 담당 임직원 또는 영업점 준법관리자가 상담내용 등을 기록·유지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기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합성 보고서

고객명:	계좌번호:
<b>■ 투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b>	
1. 고객연령대:	2. 투자예정기간:
<i>※ 실제 문항별 고객답변결과 기재</i>	
<b>■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b>	
<b>투자성향</b>	<b>투자성향 특징</b>
_____형	_____형은 _____투자성향입니다. <i>※ 회사가 분류한 투자성향의 정의</i>
투자권유 상품	
<b>■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b>	
<b>투자권유 사유 (상품가입 사유*)</b>	<i>※ 투자자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상품을 선정한 핵심적 사유를 기술</i>
<b>핵심 유의사항</b>	
* 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상품가입 사유'를 기재	
<b>■ 참고사항</b>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30px; margin-top: 10px;"></div>	
작성일자 :	작성자 성명 : (인)

(별지 제10호)

##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